



앞으로 재래단위 못쓴다

(평, 근, 인치, 돈 등 비법정계량단위를 정비)

앞으로 평, 인치, 자, 근, 돈 등 법에서 정하지 않은 계량단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거래나 홍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.

산업자원부는 이를 위해 2001년 1월부터 6개월간 집중 홍보기간을 갖고 그 이후 비법정계량단위별로 이를 사용하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『비법정계량단위 사용 근절 시책』을 추진할 계획이다.

※ 법정계량단위란

- 일상생활 및 산업·과학·교육 등 공공분야에서 길이, 무게, 넓이, 부피 등을 나타내는데 있어 통일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단위로서 『계량에 관한 법률』에서 정한 단위

- 우리나라는 국제법정계량기구(OIML)가 권고하는 국제단위계(SI)를 채택
(예) 길이 : m, 무게 : kg, 넓이 : m², 온도 : °C 등
- 예를 들어 질량부문에서 근의 경우 고기는 600g인 반면 과일은 종류 마다 200g, 400g으로 혼용되고 있어 일정한 기준이 없으며
- "1인분"으로 표현되는 고기류는 고기종류나 부위에 따라 200g 또는 150g으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무의식중에 농산물 값이나 음식값을 높게 지불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
- 넓이부문에서는 "평" 단위가 너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30평 아파트와 같은 넓이인 100m² 아파트의 크기를 오히려 쉽게 짐작하지 못하는 데다 "평형"이란 모호한 표현으로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실제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사는 전용공간에 얼마의 가격을 지불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음
- 귀금속의 경우 "돈" "냥"은 정수단위 거래가 아니어서(1돈=3.75g) 소비자의 피해가 항상 우려되고 있으며,
- 의류에서는 "인치" 사용, 골프장에서는 "야드" 사용 등 구분별한 외래단위의 사용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임

〈법정계량단위 및 비법정계량단위표〉

계량분야	법정계량단위	비법정계량단위	주 사용처
길 이	m	· 야드(0.914m) · 자(0.303m), 치(3.03cm) · 인치(2.54cm), 마 · 마일(1,600m), 리	골프장 건축공사, 보수업체 양품점, 포목점 정보처리, 문서
질 량	kg	· 관(3.75kg), 근(0.6kg) · 온스(28.3g) · 파운드(0.453kg) · 돈(3.75g)	농산물시장, 정육점 수입식품점 수입상품판매점 귀금속점
부 피	L, l, m ³	· 갈론(3.79l)	유탄유
넓 이	m ²	· 평(3.3m ²) · 마지기	아파트건설회사 전답거래
온 도	°C(섭씨도)	· °F(화씨도)	체온계